

환경표지 인증기준

EL803

제정 2013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EL803:2013



환경부

<http://www.me.go.kr>



제정자: 환경부장관
제정: 2013년 2월 25일 환경부고시 제2013-23호
최종개정: - 환경부고시 -
원안 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전화 1577-7360)으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목차

머리말	0
1 적용 범위	1
2 인용 표준	1
3 용어와 정의	1
4 환경 관련 기준	2
4.1 일반사항	2
4.2 자연보호 기준	2
4.3 오염 방지 기준	4
4.4 지속가능경영 기준	5
4.5 환경경영 기준	6
5 품질 관련 기준	6
6 소비자 정보	6
7 검증방법	7
8 인증사유	7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EL803:2013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Resort Condominium Service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의 서비스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한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정의된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3.2 린넨 용품(linen goods)

객실에서 사용하는 침대 시트, 이불, 베개 및 베개 커버, 타월, 잠옷, 방석, 커튼 등

3.3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식재료(food)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수송되는 거리(mileage)’를 말하는데,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

3.4 로컬 푸드(local food)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당한 가격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일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며, 직거래나 공급체인 단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유통되는 식품

3.5 고효율 조명기기

램프, 안정기, 등기구 등 조명기기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1등급 제품

3.6 키택 홀더(key tag holder)

객실 키를 삽입할 때 전류의 개폐 스위치가 작동하여 객실 전원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장치

3.7 중수도 설비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3.8 우수 재활용 설비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3.9 기부식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기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

3.10 탄소 상쇄 프로그램(carbon offset program)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배출량만큼을 상쇄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거나 대체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것

3.11 환경방침

조직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 의지와 환경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선언

3.12 공정무역제품

경쟁에서 뒤쳐진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생산 및 운송, 판매 단계에서 환경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제품으로 **세계공정무역협회(FLO,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의 인증을 받았거나 동등 이상의 기준을 적합한 제품

4 환경 관련 기준

4.1 일반사항

a) 환경 관련 기준은 총 100점으로 구성되며, 이 기준에 적합하기 위하여서는 필수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기준의 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각 기준 항별 선택 기준 4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비고 각 기준 항이란 **4.2, 4.3, 4.4, 4.5** 항을 의미하며, 선택기준 충족은 각 기준 항별 4개의 선택기준에서 점수를 부여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b) 근거자료 일체는 인증 신청 시점에서 이전 1년 동안의 실적으로 한다.

c) 실적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인증기간 동안 구체적인 수행 계획을 수립한 때에 한하여 부분점수(해당 기준 점수의 최대 50%)를 부여할 수 있다.

4.2 자연보호 기준

자연보호를 위하여 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연보호 기준' 점수는 총 30점이다.

표 1 자연보호 기준

기준항목	배점	비고																		
a) 구매에 있어 녹색제품 또는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가이드가 있다.	-	필수																		
b) 농수산물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숙박시설·레스토랑 등을 운영·관리할 때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가 적으며,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필수																		
c) 에너지 사용과 감소 목표가 구체화되어 매달 관리하고 있다.	-	필수																		
d) 물 사용량과 감소 목표가 구체화 되어 매달 관리하고 있다.	-	필수																		
e) 타월과 침대 시트 등 객실에 비치된 린넨 용품은 고객이 교체를 원할 때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표지를 비치하고 있다.	-	필수																		
f) 고객에게 제공하는 인쇄물은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인쇄용지의 연간 구매액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인증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한 때에 한하여 부분점수(해당 기준 점수의 최대 50%)를 부여할 수 있다.	3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녹색제품 구매액 비율 (%)</td> <td>10 이상 30 미만</td> <td>30 이상 60 미만</td> <td>6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1</td> <td>2</td> <td>3</td> </tr> </table>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 (%)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점수	1	2	3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 (%)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점수	1	2	3																	
$\text{구매액 비율}(\%) = \frac{\text{녹색제품 인쇄용지로 인쇄한 제품 구매액(원)}}{\text{인쇄물구매총액(원)}} \times 100$																				
g)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태양·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다만, 인증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한 때에 한하여 부분점수(해당 기준 점수의 최대 50%)를 부여할 수 있다. ^a	3	-																		
h) 물품 구매에 있어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된 제품 구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1	-																		
i) 폐식용유 및 폐유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여 사용하거나, 재활용 용역회사를 이용하여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있다.	2	-																		
j) 온수가열기, 식기세척기, 의류 세탁기, 건조기, 보일러 등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설정에 맞춰 두고 있다.	1	-																		
k) 키택 홀더(key tag holder)를 객실 전체 대상으로 설치하였거나, 입·퇴실에 맞춰 자동으로 조명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																		
l) 조명 절약기능이 있는 조명기기 또는 고효율 조명기기 제품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3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설치장소</td> <td>제품 비율 (%)</td> <td>점수</td> </tr> <tr> <td rowspan="2">1) 객실</td> <td>50 이상 80 미만</td> <td>0.5</td> </tr> <tr> <td>80 이상</td> <td>1</td> </tr> <tr> <td rowspan="2">2) 24시간 조명 사용 장소 (로비, 객실복도, 비상구 등)</td> <td>50 이상 80 미만</td> <td>0.5</td> </tr> <tr> <td>80 이상</td> <td>1</td> </tr> <tr> <td rowspan="2">3) 건물 외부 및 실내 주차장</td> <td>50 이상 80 미만</td> <td>0.5</td> </tr> <tr> <td>80 이상</td> <td>1</td> </tr> </table>	설치장소	제품 비율 (%)	점수	1) 객실	50 이상 80 미만	0.5	80 이상	1	2) 24시간 조명 사용 장소 (로비, 객실복도, 비상구 등)	50 이상 80 미만	0.5	80 이상	1	3) 건물 외부 및 실내 주차장	50 이상 80 미만	0.5	80 이상	1		
설치장소	제품 비율 (%)	점수																		
1) 객실	50 이상 80 미만	0.5																		
	80 이상	1																		
2) 24시간 조명 사용 장소 (로비, 객실복도, 비상구 등)	50 이상 80 미만	0.5																		
	80 이상	1																		
3) 건물 외부 및 실내 주차장	50 이상 80 미만	0.5																		
	80 이상	1																		
m) 에너지 수급분석,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 방안,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및 설비의 설치, 신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등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2	-																		

기준항목	배점	비고
n)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로 제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
o) 객실 내 화장실, 세면대, 샤워 꼭지에 누수 방지 및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2	-
p) 조명 부분의 사용량에 대한 전기 사용량 측정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2	-
q)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토종식물 또는 저수식물을 관리하고 있다.	1	-
r) 수자원 재이용 시설인 우수 재활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다음 중 1개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수의 외부 유출 억제를 위하여 자연지반의 확보, 집수설비 및 저류 시설의 설치, 침투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우수의 저장·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다. 2) 강우량, 경제성,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집수면적, 저류용량, 사용용도, 사용량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3) 공공화장실, 관리사무소, 문화시설, 전시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화장실, 조경용수, 청소용수, 분수, 스프링클러 등은 우수를 활용하고 있다.	2	-
s) 수자원 재이용 시설인 중수도 설비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다음 중 1개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수 사용 및 하수 방류의 절감을 통한 수자원의 유효 이용량 증대를 위하여 중수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공중위생 및 기기·설비 등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수질과 플랜트 처리, 원수 및 중수의 배관에 대한 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3) 오폐수 정화를 위한 식생 여과대는 우수 유출수가 넓고 평평하게 퍼지는 지역, 주로 완충녹지대 전면에 조성하고 정화식재를 활용하고 있다.	2	-
t) 최대 일조시간을 피하여 외부 식생 등에 물을 공급하는 방침이 있으며, 스프링클러에 타이머 또는 일조량에 따른 자동 동작 기능이 있어 물의 공급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인증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한 때에 한하여 부분점수(해당 기준 점수의 최대 50%)를 부여할 수 있다.	2	-
a)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4.3 오염 방지 기준

오염 방지를 위하여 표 2에 적합하여야 하며, ‘오염 방지 기준’ 점수는 총 30점이다.

표 2 오염 방지 기준

기준항목	배점	비고
a) 폐기물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저감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달성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있다.	-	필수
b) 1회 용품 저감을 위하여 디스펜서(대용량 용기)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	필수
c) 청소제품 및 각종 화학물질에 대하여 보유대장을 만들고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	필수
d) 사용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위험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필수
e)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	-

기준항목	배점	비고
f) 폐수 및 중수는 공공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오염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2	-
g) 수질 재활용 설비를 통하여 정화된 폐수 및 중수는 재활용 되고 있다.	2	-
h) 전체 공용 화장실에 환경표지인증 받은 종이 타월을 제공하고 있다.	2	-
i) 체크인과 체크아웃 과정에서 서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2	-
j) 미사용하는 가구 및 전자 제품 등에 대하여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2	-
k) 미사용하는 타월, 린넨, 욕실용품, 침대시트 등을 지역 자선단체 또는 유사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2	-
l)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와 팩스의 토너 카트리지 재사용하거나 리필하여 사용하고 있다.	1	-
m) 음식쓰레기 퇴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거나 기부식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	-
n) 건물 내부에 재활용품 수거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
o) 비성수기 또는 객실 점유율이 낮은 기간 동안에는 고객 픽업 시간표를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
p) 청소할 때 화학약품 최소사용을 위하여 농축 및 희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
q) 세탁 세제용 자동 투입량 조절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2	-
r) 식기 세척기용 세제 자동 투입량 조절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2	-
s) 화학물질의 유출로 인한 오염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2	-
t) 정기적으로 누수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때 대체하게 되어 있다.	2	-

4.4 지속가능경영 기준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표 3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속가능경영 기준' 점수는 총 20점이다.

표 3 지속가능경영 기준

기준항목	배점	비고
a) 지속가능성, 환경 및 구매 정책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필수
b) 녹색제품으로 교체 가능한 품목을 모두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교체 및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필수
c) 녹색구매 관련 자발적 협약을 정부기관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1	-
d) 지속가능한 관리계획과 환경정책은 조직 인트라넷과 대외 웹사이트 양쪽 모두에 게시되어 있다.	2	-
e) 고용인, 고객, 지역 주민 대상 지속가능(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	-
f) 환경방침과 목표, 추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있으며,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2	-
g)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및 협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사회에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일정 규모 고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	-
h)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관광인프라 정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관광객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3	-

기준항목		배점	비고
i) 건축물의 실내 인테리어 교체 또는 리모델링 공사할 때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a	기준	점수	4
	1) 인증신청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를 1종 이상 사용한 때	2	
	2) 인증신청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를 3종 이상 사용한 때	3	
	3) 인증신청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를 5종 이상 사용한 때	4	
j) 건축계획은 지속가능한 건축디자인 계획을 따르며, 건축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3	
^a 친환경 건축자재의 범위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에 기재된 건축자재 중 제품 인증 사유가 “유해물질 감소”, “지역 환경오염 감소”, “생활 환경오염 감소” 중 하나(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환경표지인증제품에 한한다.			

4.5 환경경영 기준

환경경영을 위하여 표 4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경영 기준’ 점수는 총 20점이다.

표 4 환경경영 기준

기준항목		배점	비고
a) 경영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 방지 및 예방에 대한 의지를 표시한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	필수
b) 투숙객들에게 숙박시설의 환경경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있다.		-	필수
c) 주기적으로 환경 목표와 추진 계획을 점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다.		2	-
d)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
e) 대상지에서 회의, 공연, 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는 저탄소 녹색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2	-
f) 친환경경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다.		2	-
g) 매년 주기적으로 대외적인 환경 관련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	-
h)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		4	-
i) 객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객실 및 레스토랑 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j)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목표 및 실적이 성과평가에 반영되어 있다.		4	

5 품질 관련 기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6 소비자 정보

6.1 인증제도 정보 제공

이용고객에게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6.2 친환경 행동 촉진 안내문

이용고객의 친환경 행동 촉진을 위한 홍보물을 객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5와 같다.

표 5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 관련 기준	제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품질 관련 기준	제출 서류 확인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8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 ^a	에너지 절약 ^b	지구 환경오염 감소 ^c	지역 환경오염 감소 ^d	유해물질 감소 ^e	생활 환경오염 감소 ^f	소음·진동 감소 ^g
해당 여부	●	●	○ ^h	●		○ ^h	
^a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b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c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d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e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f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g 저소음, 진동 감소 ^h 해당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가. 법 제5조의3제4항제12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할 때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 등을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